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3227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성락인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25. 접수 제11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2022.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피고 B은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D는 원고의 처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합계 28,300,000원(= 2020. 12. 25. 5,000,000원 + 2021. 1. 22. 18,500,000원 + 2021. 1. 26. 4,8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돈은 D로부터 도박에서 딴 돈을 받은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고,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위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2020. 12. 25. 피고 B에게 현금으로 3,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언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6. 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20. 12. 25.부터 2021. 1.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8,3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는 2021. 2.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2. 2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지분이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동구 E, F에 있는 G아파트

[도로명주소]

부산 동구 H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동구 E 대 204㎡

2. 부산 동구 F 대 2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7.63㎡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끝.

